

# 「日省錄」刑獄類에 나타난 死罪 기록의 고찰

A Study on the Record of a Capital Offense in  
Hyeongokryu(刑獄類) of Ilseongrok(日省錄)

柳承喜(Yoo, Seung-Hee)\*

##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刑獄類의 내용                             |
| 2. 「日省錄」의 체재와 刑獄類의<br>편찬      | 3.2 殺獄관련 刑獄類의 자료 유형                     |
| 2.1 「日省錄」의 편찬과정과 체재           | 3.3 「日省錄」刑獄類와 「審理錄」<br>· 「秋曹決獄錄」의 내용 비교 |
| 2.2 正祖의 欽恤意識과 刑獄類의<br>편찬      | 4. 결론<br><참고문헌>                         |
| 3. 「日省錄」에 기록된 刑獄類의 내<br>용과 유형 |   |

## < 초 록 >

본 논문은 「일성록」 刑獄類에 실려 있는 사죄기록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정조는 신중한 형옥처리를 위해서 옥안의 세심한 검토와 기록, 검험사목의 규정, 각종 법제 자료의 편찬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일성록」에 형옥류가 기재되는 배경이 되었다.

「일성록」은 조선후기 어느 사료보다도 형옥류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제된 내용 또한 다른 자료에 비해 충실하였다. 「일성록」 형옥류는 범죄인에 대한 원래 옥안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어 「審理錄」과 「秋曹決獄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범죄 관련인의 진술[招辭], 피해자나 가해자 가족들의 상언·격쟁 원정, 해당 군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각 도 관찰사의 장계, 형조의 계사, 왕의 판결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또한 전국의 범죄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자료의 시기적 연속성이 구축되었다는 점 등에서, 범죄 자료로서 「일성록」 형옥류가 가지는 장점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要語 : 日省錄, 刑獄類, 死罪, 犯罪, 審理錄, 秋曹決獄錄, 刑政

\*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접수일: 2007년 11월 28일 최초심사일: 2007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7년 12월 20일

<ABSTRACT>

King Jeongjo(正祖) of the Choseon Dynasty ordered through review and record of Ogan(獄案), enforcement of Geomhumsamok(檢驗事目) regulation and Goolgumbup(掘檢法), and compilation of various kinds of legislation data, for the purpose of careful punishment, which showed that he made efforts for the improved penal administration, as well as rituals and music. His commitment of this kind caused Hyeongokryu(刑獄類: records of light punishments imposed on officials and examinations and judgments on all criminals nationwide) recorded in Ilseongrok(日省錄:King's diary of the Choseon Dynasty). He made a series of works on penal administration recorded in Hyeongokryu of Ilseongrok so as to help future generations consult.

Characteristics of Hyeongokryu in Ilseongrok as data for criminal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lseongrok contains more Hyeongokryu than any other historical record in the late Choseon Dynasty and have a clear time sequence of nationwide pattern of crimes and research materials. Second, records in Ilseongrok reflect crimes from the 18th through 19th century sufficiently, with abundant contents. Hyeongokryu in Ilseongrok describes fully what Ogan wrote about criminals, making it possible to find statements of those concerned with crimes, which are missing in Shimnirok(審理錄: judicial reports) and Choojogyelokrok(秋曹決獄錄).

These characteristics imply that Ilseongrok is the primary source necessarily to refer to for studies on criminal affairs during the 18th through 19th century and it is a useful data to examine periodic situation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rimes, and lives of people, by quantifying types and occurrences of crimes.

Key words : Ilseongrok(日省錄), Hyeongokryu(刑獄類), crime, Shimnirok(審理錄), Choojogyelokrok(秋曹決獄錄)

## 1. 서론

「일성록」은 1752년(영조28)부터 1910년까지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역사서로, 자료의 내용과 사적 가치는 「조선왕조실록」과 견줄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 연구에 있어 많이 활용되는 기본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일성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초기 「일성록」의 사료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성록」의 改修 문제<sup>1)</sup>와 刀削의 실상에 대한 연구<sup>2)</sup>가 있을 뿐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일성록」내의 상언·격쟁 자료의 연구<sup>3)</sup>, 「조선왕조실록」에서 「일성록」으로 바뀌어가는 國史 체계의 변동<sup>4)</sup>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연구의 한 측면으로서 「일성록」 내에 전재되어 있는 범죄 관련 자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범죄를 비롯한 국가의 형사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과 같은 연대기와 범죄자에 관한 사건 처리 내용이나 과정을 기록한 「推案及鞫案」, 「秋官志」, 「審理錄」, 「欽欽新書」, 「秋曹決獄錄」, 「捕盜廳謄錄」 등을 들 수 있다.

연대기 자료는 비록 집권세력의 시각에서 정리되어 그 실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기록의 수준이 방대하고 다양하여 전반적인 범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의 대표적인 史書로서 일련의 國事가 여러 측면에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서술되었다. 그러나 순조대 이후인 19세기의 자료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세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록은 그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는 본고에서 파악하려는 범죄 기록 또한 마찬가지였다. 수록된 범죄 내용이 그 당시의 실상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1) 崔承熙, “1873년(高宗10) 日省錄의 一部 燒失과 改修”, 『奎章閣』12(1989).

2) 李泰鎭·洪順敏, “「日省錄」刀削의 실상과 경위”, 『한국문화』10(1989).

3) 韓相權, “正祖年間 上言·擊錚에 관한 분석”,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上言·擊錚 연구』, (一潮閣: 1996), 91.

4) 오향녕, “조선후기 국사체계의 변동에 관한 시론-실록에서 일성록으로”, 『역사와 현실』, 52(2004).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에도 범죄 관련 내용은 수록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서 처리한 사건과 행정사무, 문서 등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으로,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하지만 「승정원일기」는 왕의 주체가 되지 않았던 의식이나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실록보다 간략한 면이 있다.<sup>5)</sup> 또한 지방의 살인사건을 보고한 각 도 관찰사의 狀啓, 의금부·형조의 囚供案과 殺獄案, 상언·격쟁의 계문 등의 기록이 상세하지 않아 조선후기 전체적인 범죄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변사등록, 도 마찬가지로이다.

범죄 연구에 있어 연대기가 갖는 자료적 한계를 충족시켜 주는 사료로는 일성록을 들 수 있다. 일성록에는 ‘所敬爲先’의 원칙에 의하여 天文·祭享, 臨御召見, 頒賜恩典, 草記書啓別單, 狀啓, 刑獄 등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형옥류이다. 형옥류에는 관원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서부터 각 道の 放未放修啓冊子, 형조의 「殺獄案」, 直囚衙門인 의금부와 포도청의 啓辭, 전국 사형죄인에 대한 심리와 국왕의 판결 등이 수록되었다. 따라서 「일성록」 형옥류에 대한 고찰은 조선시대 형정운영과 민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 기록으로서의 「일성록」의 자료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일성록」의 편찬과정과 체재를 검토한 후, 「일성록」에 형옥류가 기록되게 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일성록」 형옥류의 내용과 자료의 유형을 파악할 것이다. 형옥류에 수록된 범죄 내용을 조선왕조실록과 추조결옥록 등 연대기와 범죄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할 것이며, 자료 유형에 나타난 범죄기록의 다양성도 확인하여 범죄 연구에 있어서 일성록이 가지는 자료적 가치와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범죄 자료로서의 「일성록」의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신병주, “「承政院日記」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奎章閣」24(2001), 13-17.

## 2. 「日省錄」의 체제와 刑獄類의 편찬

### 2.1 「日省錄」의 편찬 과정과 체제

「日省錄」은 정조가 1752년(영조28)부터 쓴 개인 일기인 「尊賢閣日記」에서 비롯되어 서술되었다.<sup>6)</sup>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바쁘고 번거로운 일이 있을 때라도 반드시 취침 전에 그 날의 언행과 동정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자신의 성찰 뿐 아니라 心力을 살피는 자료로 삼고 있었다. 즉위 후인 1781년(정조5)에는 작성된 일기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편찬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우선 정조는 규장각의 신하들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편찬할 일기에 대한 범례를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일기의 편찬이 「승정원일기」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편찬하는 일기의 제목에 대해서는 沈念祖가 ‘日省錄’, ‘月計錄’이라 하고 그것을 합하여 ‘日月通編’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예전에도 ‘日月錄’, ‘編年錄’ 등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답습해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sup>7)</sup> 하지만 4개월 뒤인 12월 7일 정조가 일기를 교정하는 신하들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閣臣 沈念祖와 兵曹參判 鄭昌聖이 명을 받들어 「日省錄」을 교정하였다”<sup>8)</sup>고 하여 편찬하는 일기의 제목이 ‘일성록’으로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성록은 정조 개인의 일기에서 벗어나 국가의 모든 조치와 政令, 관리의 출척, 賞罰이 날짜별로 기록되어져 신하들이 국정에 참고하는 자료가 되었다. 1783년(정조7)이후부터 처리한 정사가 많아지면서 책 수가 늘어나자, 「일성록」은 규장각 관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정조는 당직하는 관원에게 지시하여 왕에게 올린 章疏, 奏啓, 경연에서의 대화 등을 체제에 맞게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당직자는 왕의 지시를 받아 수정하고 5일마다 초본을 정서하여 왕에게 올렸다.<sup>9)</sup>

6) 正祖實錄 卷20, 正祖 9年 7月 丁丑.

7) 正祖實錄 卷12, 正祖 5年 8月 己丑.

8) 正祖實錄 卷12, 正祖 5年 12月 乙亥.

9) 弘齋全書 卷182, 羣書標記4 御定4 日省錄.

이와 같은 「일성록」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출납, 제반행정사무, 儀禮的 사항이 모두 기록되었다. 특히 체재 면에 있어서 매일의 기록을 근거로 1~5일마다 또는 월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일성록 과 공통점이 가장 많았다. 이는 “ 일성록 의 범례를 잘 만들지 않으면 「승정원일기」와 다를 바 없다”<sup>10)</sup>고 한 정조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일성록」의 체재는 매일의 기록을 1일을 단위로 하여 板面을 달리 하였으며, 하나의 사건마다 하나의 조목을 달았다. 즉 기사의 핵심을 뽑아 綱으로 삼아서 찾아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으며, 해당 綱다음에 目을 달아서 사실을 자세하게 기재하였다. 일성록」의 내용 가운데 上疏와 筓子의 경우는 중요한 말만을 잘라서 기록하여 간결하게 하였고, 詔書는 전문을 수록하여 체재를 엄격히 하였다.<sup>11)</sup> 또한 왕의 윤음, 비답, 판문은 전문을 기록하였으며, 諸臣의 上奏와 계문은 긴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점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성록」은 「승정원일기」에 비해 글은 간결하지만, 일의 내용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sup>12)</sup>

「일성록」에 수록된 기사는 국가운영의 참고 자료로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이용하기 위하여 天文類, 祭享類를 비롯하여 臨御召見類, 頒賜恩典類, 除拜遞解類, 疏筓類, 啓辭類, 草記書啓別單類, 狀啓類, 科試類, 刑獄類에 이르기까지 총 11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sup>13)</sup> 비, 우박, 우뢰, 서리 등이 내린 시간과 강수량을 기록한 천문류를 포함하여 국가의 정기적인 각종 제사나 기우제의 준비과정, 시행내용, 朝講·晝講·別講 등을 행한 장소와 座目 등이 우선적으로 서술되었다. 이와 함께 소견내용, 문무 관원의 인사에 대한 절차와 결과, 국정의 특정 주제에 대하여 관원이 올린 보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위법행위를 한 관원의 처벌과 전국 범죄인에 대한 심리와 판결 등이 轉載되어 있다. 죄수의 審理과정에서 올라온

10) 正祖實錄 卷12, 正祖 5年 8月 己丑.

11) 弘齋全書 卷182, 羣書標記4 御定4 日省錄; 日省錄凡例 序.

12) 日省錄凡例(奎6321), “其法 每一事必立綱係目 刪繁而取要 惟絲綸批判則全錄 而諸臣奏啓文字無不刪抄 比諸政院日記 文省而事詳 實合於記事者 必提其要矣…”

13) 日省錄凡例(奎6321).

각 도 감사와 형조의 계 등도 모두 실었으며, 매일의 기록 말미에는 편찬을 담당한 인물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혔다.

특히 「일성록」의 내용 가운데 예조의 儀注, 啓辭類에 있는 지방관의 狀啓, 민인들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한 上言·擊錚의 啓聞, 還給된 上疏, 刑獄類에 나타난 의금부·형조의 囚供案과 殺獄案 등이 「승정원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sup>14)</sup>은 이 자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 주로 파악하고 있는 형옥류의 기록이 가장 방대한 사료인 「승정원일기」보다 일성록에만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은 일성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일성록」 형옥류의 자료가 범죄나 刑政 연구에 있어서 1차 사료임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성록에만 형옥류가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 2.2 正祖의 欽恤意識과 刑獄類의 편찬

정조는 ‘자신이 살피고 삼가는 것은 殺獄만한 것이 없다’<sup>15)</sup>고 하며 살육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정조의 刑政에 밑바탕을 이루어 즉위 직후부터 살육 관련 조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sup>16)</sup>

먼저, 정조는 獄案 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는 옥안의 문자 하나하나에 사람의 生死가 달려있기 때문에 국가의 문자

14) 日省錄凡例(奎6321), “其法 每一事必立綱係目 … 如春官之儀注 道臣之狀啓 還給之上疏 金吾秋曹之囚供及殺獄案 上言擊錚之啓 事大交隣文字 使行聞見別單 則政院日記中所不載 而獨載於日省錄.”

15) 弘齋全書 卷167, 日得錄7 政事2 直閣臣李晚秀己酉錄.

16) 정조의 형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沈載祐,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刑政運營의 변화”, 韓國史論 34(199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 “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 『奎章閣』22(1999).

\_\_\_\_\_, “審理錄 研究 -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정순욱, “정조의 법의식: 「심리록」 판부를 중심으로”, 『全南史學』21(2003).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옥안’을 지적하였다.<sup>17)</sup> 옥안의 고찰을 經書를 보는 것에 비유하며, 전혀 의심할 것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의문을 가진 뒤에 살펴보도록 하였다.<sup>18)</sup> 이는 사망의 원인(實因)과 詞證이 모두 갖추어진 옥안일지라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살릴 만한 단서를 찾아 원통한 죄인이 없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정조는 살인·致死 사건과 변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체를 검증하고 사망원인을 밝혀 檢案을 작성하는 작업인 검험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조선후기 살인·致死사건이 발생하면 屍親은 즉시 관에 고발하였으며, 관에서는 수령이 검험관이 되어 검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검험관은 피살자·치사자의 사망원인과 상처, 범죄의 발생원인, 범행 장소, 범행도구, 살해자의 首犯, 從犯 등 검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기록한 檢案을 작성하였다.<sup>19)</sup> 이러한 검안은 옥안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왕과 형조의 신하들은 옥안을 근거로 살인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범죄인에 대한 審理와 판결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험은 살육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며, 가장 緊重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즉위 초부터 살육에 있어 검험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先王代의 하교로 시행되지 않았던 이미 매장한 자의 시신을 파서 검험하는 ‘掘檢’까지 신칙하였다.<sup>20)</sup> 조선시대의 경우 남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보는 것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큰 죄였다.<sup>21)</sup> 그러나 정조는 「無冤錄」에 의거하여 굴검하는 법을 시행하게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免罪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정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사건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적인 합의[私和]가 이루어져 시신을 몰래 매장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17) 弘齋全書 卷167, 日得錄7 政事2 待教臣金祖淳己酉錄, “公家文字最難者 莫如獄案 蓋一字轉移之間 人之生死係焉故耳.”

18) 弘齋全書 卷166, 日得錄6 政事1 直提學臣鄭志儉甲辰錄.

19) 沈羲基, “朝鮮時代의 殺獄에 關한 研究(1)”, 『法學研究』25卷 1號(198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 承政院日記 1398冊, 正祖 元年 4月 25日 庚申; 正祖實錄 卷3, 正祖 元年 5月 甲戌.

21) 大明律直解 卷18, 刑律 盜賊 發塚條.

조선후기 한성부와 지방의 민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살인자의 처벌을 관에 고발하여 법에 맡기기보다는 피해자 가족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의 방법을 선호하였다. 실제 살인의 옥사에 고발하는 것은 20~30%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모두 관에 숨기고 사회의 방법을 이용하였다.<sup>22)</sup>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가 이로 인해 죄를 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또한 사회한 당사자들 간에는 이를 악용하여 물품을 요구하는 폐가 많았으며, 이것이 마음에 차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관의 처벌을 요구하였다.<sup>23)</sup>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살육에 뇌물을 받고 사적으로 합의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다.<sup>24)</sup> 정조도 이에 대한 폐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白骨을 검험하는 掘檢 자체가 이를 당한 사람을 다시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장한 시신을 파내어 검험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는 살육을 신중히 하려는 왕의 의지였다.

이와 함께 정조는 한성부의 경우 검험하는 규칙과 관례가 지방보다 미흡했기 때문에 한성부의 「檢驗事目」을 새로 규정하였다.<sup>25)</sup> 그는 한성부에서 발생한 살육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였다. 첫째, 初檢과 覆檢의 문서 내용이 너무 소략하고 부족한 점과 둘째, 죄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정조는 初檢狀과 覆檢狀, 結語 및 기한 내에 檢屍를 행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지방의 사례에 의거하여 행하게 하였다. 아울러 형조에서의 完決도 지연시키거나 연기하지 못하게 했으며, 推問에 소홀한 해당 판서와 낭관도 처벌하였다.<sup>26)</sup>

죄수에 대한 기록도 철저히 하였다. 당시 담당 관리들이 각 사에 간혀있는

22) 牧民心書 刑典 六條 斷獄.

23) 경상도 順興의 金致乞은 李後元과 싸우다 이후원이 죽자 관에 고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50냥을 주고 私和하였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뒤 이후원의 아들이 다시 김치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관에 發告하였다(審理錄 卷9, 壬寅2 慶尙道 順興 金致乞獄). 순친인 吳昌玉은 妹夫 金觀을 절구공이로 구타하여 치사케 하였는데, 누이를 중용하여 田地와 錢兩을 지급하고 사회하였다가 후에 사회한 문권을 빼앗으며 禾穀을 탈취하자 그 누이가 관에 말고하였다(秋官志2, 詳覆部 審理獄案, 正祖5).

24) 續大典 卷5, 刑典 殺獄條, “殺獄受賂私和者 依本律勘罪”.

25) 正祖實錄 卷17, 正祖 8年 3月 壬子.

26) 正祖實錄 卷17, 正祖 8年 3月 丁酉.

죄수들을 숨기고 아뢰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이를 지적하며, 法禁을 관장하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庶獄을 신중히 처리하는 뜻에서 모든 죄인의 죄상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sup>27)</sup> 죄인의 기록은 정조가 즉위할 때만해도 형조에서 10일에 한 번씩 錄啓하는 것이 항식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10일 사이에 억울하게 죄를 받은 죄수가 있을 경우 그 억울함을 전할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며, 사건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5일에 1번씩 죄수를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sup>28)</sup> ‘五日錄啓’의 준례에 의거하여 매달 그 달에 있었던 옥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며,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옥사를 모두 합쳐서 기록하여 입계하는 것을 定式으로 삼았다.<sup>29)</sup> 이와 함께 정조는 의금부와 형조의 決獄案을 대소를 막론하고 중요한 절목을 초록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春季朔에 1부를 베껴서 上奏하도록 하였으며, 啓下朔 다음에는 매년 12월에 책자를 만들도록 하였다.<sup>30)</sup>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일련의 형사 정책이 정조대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실시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시대 대민 통치는 유교이념에 입각한 교화 위주의 예와 형벌을 주 기능으로 하는 법에 있었다. 유교의 예치가 중심이 되어 예로써 다스리되 이를 거스르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었다.<sup>31)</sup> 따라서 왕과 대신들은 법과 형벌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정치를 보조하려고 하였다. 정조 또한 왕도정치에 있어서 먼저 힘써야 할 것으로 禮樂과 刑政을 들었다.<sup>32)</sup>

특히 정조는 ‘나의 정치는 뜻대로 되지 않아 비록 三代를 만회할 수는 없지만, 곧 원하는 바로는 三代가 아니면 달갑지 않다’<sup>33)</sup>라고 하여 夏, 殷, 周시대를 통해 실현되었던 옛 聖王들의 德化에 의한 정치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즉 그는 하·은·주 삼대의 정치를 자신의 정치모델로 삼고, 堯·舜을 훌륭한 정치가의 준거

27)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9月 癸丑.

28)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9月 甲寅.

29) 正祖實錄 卷16, 正祖 7年 7月 辛丑.

30) 正祖實錄 卷16, 正祖 7年 7月 丁未.

31) 趙允旋, “朝鮮後期 田民訟의 樣相과 民의 法意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1-2.

32) 日省錄 正祖 元年 6月 28日 壬戌.

33) 弘齋全書 卷166, 日得錄6 政事1 待教臣李崑秀癸卯錄.

로 삼아 君民의 일체성을 강조하며, 民隱을 파악하여 해결하려 하였다.

정조가 다른 왕대와 달리 형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三代 성왕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관 때문이었다. 정치의 보조역할을 한 형정은 곧 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었으므로 민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형벌을 줄이기 위해 흠휩전칙을 반포하여 刑具를 바로잡고 가혹한 형벌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옥송을 신중히 처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방책으로 요·순의 정치가 기록되어 있는 「書經」을 정치에 있어 중요한 텍스트로 삼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聖王의 ‘好生之德’과 ‘罪疑惟輕’은 민의 생사와 관련 있는 살옥에서 강조되어, 정조가 의심스런 옥사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sup>34)</sup>

이처럼 정조는 이상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민의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형사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조의 의지는 「大典通編」 간행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때 장차 大典通編을 印行하려 하니, 하교하기를, “원전과 속전을 합하여 편찬하는 것은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갑자년 이후에 새로 더 넣는 것은 신중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차라리 자세하게 할지언정 소략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 刑典은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sup>35)</sup>

정조는 「대전통편」 간행시 우선적으로 ‘자세하게 할지언정 소략하게 하지 말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6典 가운데 특히 刑典을 지목하였다. 정조가 형전의 상세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민의 생사고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조의 정치관과 일련의 형사정책은 「심리록」을 비롯하여 「추관지」, 「무원록언해」 등 법례, 판례집이 편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형옥류가 일성록」에 기재되는 단초가 될 수 있었다.

34) 沈載祐, “審理錄 研究 -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185-188.

35) 正祖實錄 卷19, 正祖 9年 2月 癸卯.

승지 洪義浩가 아뢰기를, “무릇 심리한 옥안에 대해서 해조에 관한 것은 해조의 심리 낭청으로 하여금 單抄를 주관하게 해서 「審理錄」을 수정할 바탕을 삼게 하고, 또한 초본 두 건을 內閣 및 승정원에 나누어 보내 日省錄 과 日記」에 기재하도록 법식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따랐다.<sup>36)</sup>

1799년(정조23) 정조는 형조의 심리 낭청으로 하여금 심리한 옥안의 초록을 작성하여 「심리록」을 수정하는 자료로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이를 「일성록」에 기재할 것을 주장한 승지 洪義浩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후 형옥류가 「일성록」에 수록되는 바탕도 마련하였다. 三代 성왕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정조의 정치관 속에서 배태된 刑政에 관한 정조의 의지는 다른 사료와 달리 「일성록」에서 형옥류의 상세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 3. 「日省錄」에 기록된 刑獄類의 내용과 유형

#### 3.1 刑獄類의 내용

「일성록법례」에는 형옥류의 유형으로 29개의 實例가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이 가운데 유사한 내용을 묶어 9개 유형으로 사례를 제시하였다.

- (가) 推中官○○○, 罷某官○○○職, 拿處某官○○○
- (나) 忠淸監司某 以某縣監罪狀 馳啓
- (다) 命時囚某等勘放 某等議處 某等照律
- (라) 配某于某州府郡縣, 竄某于某州
- (마) 設推鞫于本府, 設庭鞫于內兵曹
- (바) 命擊錚人等原情令廟堂稟處, 秋曹以猥濫擊錚勿施啓
- (사) 秋曹殺獄例: 命洪原囚金宗得 依前訊推, 命海州囚高○○ 嚴訊取服

36) 正祖實錄 卷51, 正祖 23年 5月 己卯.

(아) 判下金吾諸道放未放回啓, 放定配罪人某等

(자) 放釋輕囚<sup>37)</sup>

(가)는 관리의 죄과에 대해 추문하여 고찰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나 그 죄과로 罷職, 拿處 등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주로 관직자의 죄과에 대한 왕의 처벌이 서술되었다.(나)는 도의 관찰사가 관할 현감의 죄상이나 해당 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馳啓하는 내용으로, 각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행위를 왕에게 보고하는 狀啓가 대부분이다.(다)는 의금부나 전옥서에 간혀 있는 죄인에 대한 죄상과 처리과정이다. 여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죄인의 죄상을 조사한 후 석방하라는 勘放,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議處, 법규를 적용하라는 照律 등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죄인에 대한 정배기록으로 죄상, 형량, 정배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었으며,(마)는 변란, 역모, 당쟁, 邪學, 凶疏, 掛書, 御史假稱, 왕릉방화 등의 중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해 의금부에 推鞠을 선행하거나 중지를 명령하는 내용이다.(바)는 민인들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국왕에게 直訴하는 상언이나 격쟁의 원정이 기록되었으며, 이 가운데 형조에서 猥濫 擊錘人들을 기록하여 이들의 상언·격쟁을 처리하지 말도록 하는 계사도 함께 수록되었다.(사)는 형조에서 처결한 살육안을 기재한 것이다. 살인사건에 대한 검험, 首犯과 從犯의 분간, 범죄원인, 범죄인에 대한 형조와 대신들의 논의, 이에 대한 국왕의 판부 등이 서술되었다.(아)는 8도에 定配된 죄수들 가운데 석방할 자와 석방하지 않을 자에 대한 계본을 관하하는 내용이며,(자)는 한성부에서 발생한 경범죄수의 석방 수효이다.

이처럼 일성록 형옥류에는 관직자의 위법행위에서부터 이에 대한 처결, 민인들의 상언·격쟁, 현재 간혀있는 죄수, 추국죄인, 살육죄인들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처벌, 정배죄인의 석방과 미석방, 경범죄수의 석방 등 당시 범죄인의 현황과 처리과정, 범죄유형 등이 상세히 서술되었다.

「일성록」에 기재된 형옥류를 死罪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살육류와 비살

37) 日省錄凡例(奎6321), 刑獄類.

옥류로 나눌 수 있다. 살옥류는 살인·강도, 폭행치사, 과실치사, 威逼致死 등이며, 비살옥류로는 국가의 중죄인 謀叛, 不忠, 殿牌作變, 掛書 등 정치범죄와 사회·경제범죄인 사기·절도, 僞造, 放火·失火, 掘冢 등이다. 일성록 형옥류의 경우 정조대부터 철종대까지 총 2,853건의 사죄를 파악할 수 있다. 사죄 가운데 살옥안이 2,626건으로 92%를 차지하며, 정치범죄를 제외한 위조, 절도 등의 비살옥안은 227건으로 8%에 불과하였다.<sup>38)</sup>

그러면 일성록 형옥류의 내용이 얼마나 풍부한지 「朝鮮王朝實錄」, 「審理錄」, 「秋曹決獄錄」 등과 비교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조대에서 철종대까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형옥류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사형범죄의 현황을 표로 나타내었다.

<표>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正祖代~哲宗代 死刑犯罪人の 현황

번호	시기		범죄 내용
	연도	월일	
1	정조즉위	12.25	윤음 위조
2	정조1	7.4	禁中の 뜰에서 칼을 뽑은 朴重根을 不待時斬刑에 처함
3		7.15	泮人 鄭漢龍이 칼로 사람을 살해
4		10.26	自如察訪 朴東俊과 全順三이 驛戶 權致文을 濫刑하여 살해
5		11.12	印信을 위조한 죄인 朴斗杓
6		11.24	冊曆을 私造한 죄인 李同伊, 살옥죄인 李彝永에게 減死定配를 명함
7	정조2	11.2	昭寧園 절도 죄인 斗山에게 부대시의 형벌을 적용할 것을 계함
8		12.23	殺獄罪人 金漢澤의 獄案
9	정조3	2.16	살옥죄인 金以灝의 옥안 실상을 조사하고 사형을 감함
10		3.15	강상죄인 金允澤의 錄啓에 대한 하교
11	정조4	3.9	북도에서 해로로 범월한 죄인에 대한 처리
12	정조5	10.18	형조에서 黃鍾을 훔친 房祐星을 擬律하여 아뢰
13	정조6	5.26	晉州의 營裨가 인명 살해
14		6.4	역예 林仁植의 첩보위조
15		8.20	私掘罪人 金貞采에 대해 추국설치

38) 柳承喜, “正祖代~哲宗代 漢城府 死刑犯罪의 실태와 민의 갈등양상- 日省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권41(2007), 189.

「日省錄」 刑獄類에 나타난 死罪 기록의 고찰

16	정조7	1.28	칼을 들고 관장을 위협한 금천의 죄인 韓宗雲을 처형
17		3.12	남산에 방화한 安月城에 대한 처벌
18		6.3	白川郡 살육 죄인 趙載恒에 대한 처벌
19		12.5	옥천인 鄭潤煥이 목덕산 봉수대 근처에서 방화
20	정조8	2.3	順陵에 神御·紋席을 훔쳐 간 죄인 金命得에 대한 처벌
21	정조10	1.10	宮奴 貴得에 대한 형조의 계
22		6.12	상전 李永達가 金道興에게 곤욕을 당하자 구타하여 치사
23		7.21	士人 尹昕이 賤人 李好得을 폭행치사
24		윤7.1	예조 관서가 朴千根의 과부 李氏 살인사건을 아뢰
25	정조11	7.29	살육죄인 李光晉에 대한 하교
26	정조12	6.27	아이를 과실치사한 太僕의 牽夫 南莫亨의 처벌
27	정조13	1.16	대원군 사당의 물건을 훔친 김응우의 처벌에 관해 논의
28		1.30	鎭安縣의 살인죄인 卞德金에 대한 처벌
29		윤5.19	印信위조 죄인 南毅鎭 등에 대한 처벌
30	정조14		진라도 강진현에서 銀愛가 이웃의 安召史를 살해
31		8.10	長興의 申汝侗 살육사건에 대한 왕의 판부
32			대구부에 사는 徐膺復, 徐膺海 살육사건에 대한 왕의 판부
33	정조15	6.9	홍패를 위조한 죄인 金普煥 등을 중군하게 함
34		9.20	湖西의 살육죄인 金啓孫에 대한 처벌
35		10.22	술에 취해 아내를 찢러 죽인 金得良에 대한 형조의 계
36	정조16	5.12	公州牧의 趙巴金·趙甘得 살육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장계
37	정조17	4.21	전교 위조 죄인 李軫에 대한 형조의 계
38		11.25	살육죄인 陰世亨에 대한 형조의 계
39	정조18	8.17	청주목사 安廷鐸이 백성을 죽인 사건에 대한 우의정의 계
		9.8	창원 부사 이어절의 살인 사건을 보고
40	정조20	3.16	兵符절도죄인에 대한 계
41	정조21	5.12	살육죄인 金保同에 대한 심리
42		5.18	富全을 살해한 李分金에 대한 판결
43	정조22	11.19	康津縣에 사는 梁道孫 형제 사건에 대한 계
44			머느리 간통을 사주한 여자를 살해한 申思良에 대한 계
45	정조23	5.22	修理契의 종이를 훔친 아전 李昌麟 등의 옥안을 관하
46		8.26	무늬있는 비단에 대한 금법을 어긴 金衆望德에 대한 논의
47	순조1	8.10	犯越罪人 李顯宅을 효시
48	순조4	3.4	무고죄인에 대한 계
49	순조7	3.2	孝昌墓의 기명과 齋室의 鐵環을 훔친 文璘聖에 대한 형조의 계

50	순조8	8.9	살육죄인 金來榮에 대한 형조의 계
51	순조9	6.7	御寶를 위조한 죄인 李集尙에 대한 형조의 계
52		6.17	살육죄인 申在弘에 대한 형조의 계
53		10.23	곡식을 빼앗고 구타한 白中太에 대해 효수를 명함
54	순조10	2.6	역관의 등제를 도모했던 변창감에 대한 처벌
55		4.5	酒禁의 죄를 범한 掖隸 金應漢에 대한 처벌
56	순조11	2.21	私婢 月連의 아버지를 죽게 한 보령의 前 宣傳官 李恩植의 처벌
57		윤3.16	포고 집에서 난동을 부린 무예별감 安處誼 등에 대한 처벌
58	순조15	1.28	과천현의 軍器를 도둑질한 죄인 裴千孫에 대한 처벌
59		2.9	종으로서 내상전을 죽인 죄인 私奴 德順에 대한 처벌
60	순조17	11.10	越境罪를 범한 金致礪를 효수
61		11.11	병조의 尺文을 위조한 죄인 崔光仁을 효수
62	순조18	4.18	영변부의 강상을 범한 죄인 金石彦에 대한 형조의 계
63	순조19	12.11	英陵 丁字閣을 파손한 朴重大에 대한 포도청의 계
64	순조20	3.16	湖西 都會所 穀簿를 훔쳐내 농간을 부린 죄인의 처벌
65		5.2	남편을 죽인 죄인 劉於仁連의 처벌
66		8.20	선혜청의 하리들이 장부를 훔쳐서 재물을 도둑질
67		10.7	西部의 유학 許珽이 비부 姜龍雲을 때려 죽임
68	순조23	3.3	장단의 고을 백성이 고려 왕릉 근처에서 숲을 굽다가 실화
69		8.10	금위영 石手 崔英得이 승례문 근처의 體城을 헐음
70	순조24	6.13	범월죄인 金振聲에 대한 비변사의 계
71		8.17	살육죄인 蔡周文이 아버지를 죽인 黃成燁을 찢러 죽임
72	순조26	2.28	포함을 감추려고 어영청의 사고를 방화한 車彦龍을 효수
73		5.2	현감을 구타하고 난동을 부린 金花淑 등을 엄벌
74	순조27	5.2	치아버리를 죽인 죄인 福梅의 結案을 받아 처형
75		5.7	액예를 사칭하고 민을 침학한 朴完根에 대한 처벌
76	순조29	3.18	왜인이 왜관 소통사 裴末敦을 살해
77		4.17	시어미를 살해한 죄인 金只連에 대한 처벌
78		5.18	남편을 살해한 죄인 金女人에 대한 처벌
79		7.22	아버지를 살해한 죄인 金末孫에 대한 처벌
80	순조32	3.13	甲山府의 범월죄인 張豪京을 효수
81		9.21	金連破回가 어미의 원수를 살해한 梁乃春의 어미를 살해
82		11.23	금위영 字內的 外南山 禁標 안에 偷埋한 張濟汲에 대한 처벌
83	현종1	3.16	諺書로 綸音을 위조한 崔公弼에 대한 처벌
84		윤6.2	아버리를 살해한 韓明辰에 대한 처벌
85		8.27	昭寧園에 방화한 金龍希를 추국

「日省錄」 刑獄類에 나타난 死罪 기록의 고찰

86	현종3	8.19	禁衛營에서 화약을 도둑질한 죄인 林昌赫을 효수
87		10.19	潛源殿의 기물을 절도한 죄인 元大益에 대한 처벌
88	현종4	5.17	포교를 타살한 崔龍得을 효수
89		10.4	다른 사람을 誣陷하여 告變한 禹炳謨를 효수
90	현종5	10.10	金振成이 金命吉을 살해
91	현종6	3.27	창곡을 훔친 태창의 창속 崔錫麟 등을 처벌
92		5.4	영릉에서 쓸 제물 절도
93		5.25	서북진의 軍器를 훔친 廉處玉을 효수
94		5.25	사주전 죄인 朴仲道를 처벌
95		7.13	軍器를 훔쳐 낸 죄인 安昌憲을 효수
96		7.15	龜城府의 화약을 훔쳐 낸 죄인 邊海寬을 효수
97		12.15	아비를 죽인 죄인 李昌錫에 대한 처벌
98	현종7	8.30	군기를 훔쳐 돈을 주조한 朴仲道외 2인에 대한 처벌
99	현종9	3.17	伊川의 流民 崔寬裕가 昌慶宮의 供北門에 난입
100	현종11	4.25	충화죄인 千好孫에 대한 계
101		8.19	아버지를 죽인 양반 任泰斗에 대한 관찰사의 계
102	현종12	8.12	사주전 죄인 黃喆云 등 4인을 효수
103	현종13	1.23	범월죄인 許廣春·金上實에 대한 처벌
104		8.9	범월죄인 宋得哲·金光云에 대한 처벌
105		9.24	明川의 朴宗允의 獄案
106	현종14	5.9	譯官 朴禧英이 아편 연기를 빼는 기구를 가져오다 적발
107		6.17	아버지를 죽인 죄인 尹可玄에 대한 처벌
108	철종5	8.14	외주부의 범월죄인 張添吉을 효수
109		9.25	무고죄인 전라 병사 李健緒에 대한 포도청의 계
110	철종8	7.22	범월죄인 金益秀에 대한 비변사의 계
111	철종9	8.30	투서하여 무함한 전 현감 朴慶善을 정배

<표>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정조대 46건, 순조대 36건, 현종대 25건, 철종대 4건으로 총 111건의 범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정조대에는 정조 9년과 19년 2년간의 범죄 기록이 보이지 않았으며, 순조대에는 순조 2년~3년, 5년~6년, 12년~14년, 16년, 21년~22년, 25년, 30년~31년 등 13년간의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종대에는 현종 2년, 8년, 10년 등 3개년만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철종대에는 철종 5년, 8년, 9년을 제외한 11개년의 범죄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의 범죄기록은 정조대와 헌종대의 경우 사형범죄에 대한 국왕의 판부가 비교적 시계열적으로 나타났지만, 순조대와 철종대에는 시기적으로 누락된 것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기재된 범죄건수도 1년에 2, 3건으로 매우 적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일성록」은 정조대부터 철종대까지 87년간의 범죄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 범죄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 보는데 용이하였다.<sup>39)</sup> 「일성록」에는 중복된 죄인을 제외하고는 87년간 2,853건의 사형범죄가 기록되었으며, 매년 평균 33건의 범죄가 국왕의 판결을 받았다.

범죄 내용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은 국가의 기물을 훔친 절도와 문서 위조가 29건, 궁궐·관아물의 방화·실화가 6건이다. 인명사건인 살육은 47건으로, 부모, 남편, 아내, 상전을 죽인 살인사건과 양반이 양인이나 노비를 살해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밖에 犯越이 7건, 私掘, 越牆·攔入, 궁궐훼손, 무고, 作拏 등이 22건이었다.

「일성록」의 경우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살육죄인이 수록되어 있는 것에 비해,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犯分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주로 기록되었다. 또한 범죄의 성격이 국가적 법익과 왕권을 침해하는 것인 관문서 위조, 궁궐·관아물의 절도, 궁궐난입 등에 관한 사건이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의 지배체제가 신분적 사회질서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적 도덕질서를 중심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일성록」의 기록을 정조대 사형죄수의 판결을 기록한 「심리록」과 상호 비교해 보자. 「심리록」은 정조대 편찬된 사료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가 기록되었다. 여기에는 한성부를 비롯한 전국 범죄 1,112건이 수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68건을 제외한 1,044건은 「일성록」에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조대 「일성록」에 수록된 사형범죄 가운데 42건은 「심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심리록」과 「일성록」 또한 정조대 모든 범죄를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39) 「일성록」 형옥류에 기록된 사회현황은 뒤의 <附表>를 참조할 수 있다.

것이다. 하지만 전체 범죄에 있어서 오히려 「일성록」은 사형범죄 뿐 아니라 정배 이상의 비사형범죄 또한 확인할 수 있어 전 시기 범죄양상을 살필 수 있는 1차 사료의 역할을 하였다.

게다가 「일성록」은 순조대에서 철종대까지 「추조결옥록」의 살육안도 대부분 수록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는 가장 많은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추조결옥록」은 1822년(순조22)부터 1893년(고종30)까지 형조에서 결옥한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순조대는 순조 22년, 30년, 34년 만을, 헌종대는 헌종 9년과 11년만을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철종대에는 철종 1, 2년을 제외하고는 12년 동안 형조에서 결옥한 사건들이 서술되었다. 따라서 「추조결옥록」은 철종대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의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지만, 순조대와 헌종대의 기록이 소략하여 이 두 시기의 범죄양상을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철종대를 중심으로 「추조결옥록」에 나타난 사형 범죄건수를 보면 총 557건으로, 이는 「일성록」에 기록된 철종대 범죄건수 477건보다 80건 많은 수이다. 하지만 「추조결옥록」의 경우 1850년(철종1)에 수록된 146건의 범죄는 「일성록」에서는 모두 순조대와 헌종대에 기재되어 있었다. 즉 「일성록」의 사형범죄는 「추조결옥록」의 범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19세기의 모든 범죄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성록」의 경우 19세기의 범죄 역시 파악할 수 있어 자료의 시계열성을 뚜렷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3.2 殺獄관련 刑獄類의 자료 유형

「일성록」 형옥류 가운데 본고에서 파악하는 사죄의 92%가 살육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형옥류 자료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시대 살육의 처리과정은 크게 ① 檢官의 검험과정, ② 관찰사·형조판서의 죄인 신문인 會推·完決·同推·結案 과정, ③ 국왕과 대신 등의 최종 심리인 三覆으로 나눌 수 있다. 「일성록」은 그 가운데 왕에게 최종 보고되는 ②, ③의 절차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형조의 啓辭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계사들을 문서의 특징적 형태와 자료적 가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인과 사건 관련자들의 供招를 기록한 형조나 포도청의 계사이다. 「일성록」에는 「심리록」과 「추조결옥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屍親人, 干連人, 正犯 등 범죄 관련인의 진술[招辭]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당시 범죄의 정황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 1> 1797년(正祖21) 京囚 金宗得의 殺獄案

(가) 刑曹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① 이번 11월 22일 右捕廳의 移文에 ‘서강 水鐵里에 사는 金宗得이 이번 달 18일에 땔나무를 사러 마포에 갔다가 ... 죄인 金宗得과 관련된 여러 사람을 모두 이송하였습니다. ② 北部都事 徐興輔가 시체가 놓인 곳에 이르러 먼저 招辭를 받은 후에 검험을 하였습니다.’ ②-1 屍親 吳聖裕의 조사에, ‘저는 부평에 사는데, 저의 동생 성록이 이번 달 18일 땔나무를 팔러 경강으로 향할 때 15세 아이인 저의 아들(오)봉루 또한 땔나무를 팔려고 마포로 따라 갔습니다. ...’ ②-2 正犯 金宗得의 조사에 ‘이번 18일 동리에 사는 오복이와 함께 마포장시에 나갔다가 ... 소를 탈취하고자 하여 그 아이를 鞍峴 봉수대 밑으로 유인해서 먼저 돌부리로 한번 때리고...’ ②-3 干連人 金五福의 조사에 ‘19일 밤 종득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종득이 潛屠로 잡혀가서 지금 구타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②-4 24일 오봉루의 시신을 예에 의거하여 검험하니 仰面은 두 눈은 감겨져 있고 ... 길이는 2촌 7푼, 너비는 9푼, 깊이는 5푼입니다... ②-5 初檢官인 해당 部의 都事 徐興輔의 結辭에 손으로 직접 누르고 만져 상세히 살펴보니 이마와 눈썹 등의 상처는 돌로 때린 상처가 분명하며...” ③ 또 계하여 아뢰기를, “죄인 金宗得은 규례에 의거하여 結案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不待時斬에 관계되니 의정부에 보고하여 詳覆을 시행할 것을 청합니다...”(나)하교하기를, “律대로 하라” 40)

<자료 1>은 형조의 계사와 왕의 관부로 이루어진 한성부 살육죄인 金宗得의 옥안으로, 형조의 계사에 屍親人, 干連人, 正犯의 招辭, 검험관의 검험내용, 초검관의 의견서인 結辭 등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가)의 ①과 ②~②-5는 형조에서 검험하는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형조는 시친이 바친 所志(또는 白活)나 해당 部의 牒呈, 관사의 移文에 나타난 사실에 의거하여 검험하는 關文을 발송하였다. 41) 위의 자료 ①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①은 죄인을 잡은 右捕盜廳의 移文으

40) 日省錄 正祖 21年 12月 2日 丁酉.  
41) 秋官志 卷2, 詳覆部 附檢驗.

로, 범죄인의 거주지, 성명, 직역, 사건의 개요,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②~②-5는 검험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를 통해서도 북부도사 서흥보가 시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먼저 시친과 정범의 招辭[진술서]를 받은 후 검시를 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②-1은 시친의 초사로, 시친이나 致死人의 거주지, 치사인과 시친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②-2는 정범 김종득의 진술 내용이며, ②-3은 사건과 관계된 간련인의 초사이다. 정범의 초사에는 사건 당시의 정황, 치사자와의 관계, 범행 목적, 범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기록되었으며, 간련인의 초사에는 정범인의 당시 행적,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적혀 있다.

이와 함께 검험관의 검시 내용(②-4)이 기재되었다. 검험관은 致死人의 신장과 얼굴색, 신체의 손상 여부 등 모든 신체 부위를 상세히 살펴본 후 얼굴의 모습, 상처 부위, 상처의 크기 등을 기재하였다. 그런 후 초검관의 성명과 군현명을 표시하고 검험 의견서인 결사를 적었다(②-5). 이러한 것을 토대로 형조는 ③범죄인의 처리과정, 율문 적용문제, 죄목과 형량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하였으며, 왕은 본 살육에 대해 판부(나)를 내렸다.

<자료 1-1>은 1807년(순조7) 어보를 위조하여 홍패를 만든 죄인 姜允祥과 위조홍패를 매득한 사람들에 대한 왕의 처벌을 요하는 左邊捕盜廳의 계사이다. (가)는 포도청의 계사 내용으로, ①은 위조죄인 강운상의 초사이다. 죄인들은 포도청으로부터 어디에서 거주하며, 어떤 직역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죄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초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역, 거주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 위조방법, 위조홍패의 발매처 등이 기술되었다. ②, ③, ④는 위조된 홍패를 매득한 죄인들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낙방한 자들로, 정범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역, 거주지, 위조홍패를 매득한 연유와 방법, 매득 가격 등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포도청에서는 ⑤죄인들을 형조로 이송하여 처리할 것을 왕에게 요청하였으며, 왕이 이를 윤허하는 양상(나)을 살펴볼 수 있다.

<자료 1-1> 1807년(純祖7) 僞造罪人 姜允祥에 대한 左邊捕盜廳의 啓

(가) 左邊捕盜廳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御寶를 위조한 罪人 姜允祥, 鄭信大, 韓龍善, 韓光天 등을 모두 엄하게 곤장을 쳐서 신문하니 ① 姜允祥의 초사에 이르기를, ‘저는 본래 松禾民으로 병오년에 승호포수로 상경하였다가 갑자년에 직에서 쫓겨났습니다. … 제가 궁핍하여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이에 거짓 홍패 1장을 만들어… 50냥을 받고(한) 용선에게 팔았습니다’라고 합니다. ② 鄭信大의 초사에 이르기를 ‘信川에서 거주하며 … 신유년 慶科에 初試에 入格하고 會試에서는 떨어졌는데, 저의 食主人인 琴一煥이 타인의 홍패 1장을 펼쳐 성명 및 大年號를 칼로 긁어낸 후 저의 성명을 쓰고 어보를 찍었으며…’ ③ 韓龍善의 초사에 이르기를 ‘文化에 살면서 갑인년 庭試에 과거를 보려고 상경하여 普濟院에 사는 李百奎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 저에게 일러 말하기를 元榜에 賣科할 경우 錢 50냥을 갖추어 지급한 연후에 홍패가 마땅히 지급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말에 따라 마련해 주었더니 …’ ④ 韓光天의 초사에 이르기를 ‘文化에 살면서 병인년 庭試에 과거를 보려고 상경하였는데 …(한)용선의 지휘로 50냥을 지급하여 강윤상에게 홍패 1장을 샀습니다’고 합니다. ⑤ 정신대, 한용선이 거짓으로 出身한 정황과 한광천이 용선의 소개를 받고 거짓 홍패를 산 곡절은 지금 이미 자백했습니다. … 위의 죄인 강윤상, 정신대, 한용선, 한광천은 청컨대 모두 秋曹로 이송하여 법에 비추어 처단하십시오” 하니(나) 윤허하였다. 42)

<자료 1>과 <자료 1-1>의 경우는 형조나 포도청의 죄인 처리 과정과 해당 사건의 정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범죄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자료 1>은 다른 범죄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성록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자료이다. 이런 유형의 계사는 일성록 의 기록 가운데 주로 정조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정조대 기록의 약 50% 가량을 차지하였다.

둘째, 살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성부는 형조의 계사와 왕의 판부를, 지방은 해당 관찰사의 조사 보고, 대신들의 논의, 왕의 판결 내용 등을 모두 기록한 경우이다. <자료 2>는 1806년(순조6) 한성부 서부의 살육죄인 金河龜의 옥안이며, <자료 2-1>은 1809년(순조9) 전라도 광주의 살육죄인 金永培의 옥안이다.

42) 日省錄 純祖 7年 10月 17日 乙酉.

<자료 2> 1806년(純祖6) 京囚 金河龜의 殺獄案

(가) 이보다 앞서 형조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① 西部 金河龜가 ② 金天逢의 처 崔召史를 ③ 때리고 발로 차 ④ 3일 만에 치사하여 ⑤ 갑자년 10월 초 1일에 가두었습니다. ⑥ 初檢官인 西部都事 李志淵의 檢狀에는 ⑦ 實因은 발로 채여 태아가 다쳐 치사한 것(被踢胎傷致死)으로 懸錄되었으며, ⑧ 正犯은 金河龜로 懸錄되었습니다. ⑨ 覆檢官인 漢城主簿 鄭備容의 檢狀에는 ⑩ 實因과 ⑪ 正犯은 初檢과 같았습니다.”(나) 형조판서 李勉競의 完決에 이르기를, “① 崔女의 傷痕은 길이가 7촌으로 김푸르고 단단하며, 회입한 지는 만 6개월이 되었고, 제멋대로 血流가 뻗쳐있는 것이 죽은 지 3일 이내이므로 實因은 재차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② 다시 엄하게 형신하여 기어이 정상을 알아 내도록 해야 합니다. ... 43)

<자료 2-1> 1809년(純祖9) 光州囚 金永培 殺獄案

(가) 全羅監司 李肇源의 狀啓에 따르면, “① 光州 죄인 金永培가 ② 陳日良을 ③ 구타하여 ④ 9일 만에 치사하였는데, ⑤ 이미 매장하여 검험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⑥ 初查官 光州牧使 李相璜의 報辭에 ⑦ 실인은 구타당해 죽은 것으로 懸錄되었으며, ⑧ 正犯은 金永培로 懸錄되었습니다. ⑨ 覆查官 和順縣監 李永錫의 報辭에 ⑩ 實因과 正犯이 조사와 같으니, ⑪ 죄인 김영배는 전례에 의거해서 신문하고 추고하여 기필코 자복을 받아야 합니다.”(나) 형조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이 獄事를 大臣과 의논한 즉 左議政 金載瓚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처를 간하고 다른 사람의 지아비를 죽여 ... 아주 흉악하고 참혹하니 형신을 가하여 자복을 받아야 하는데 단연코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합니다.” 신 등이 말하기를, “이 옥사는 豪橫한 班族이 常漢의 正妻를 빼앗고 도리어 그 남편을 죽였으며, ... 정컨대 엄히 형신하여 자복을 받아야 합니다.”하니(다)하교하기를, “鄉曲의 豪班이 강제로 세력을 빙자하여 처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니 보기에 예사롭지 않은 정황이며 극히 흉악하고 痛惡하니 엄히 형벌을 하여 지만하는 초사를 받으라.” 44)

이 두 자료의 유형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성부의 옥안은(가), (나) 두 부분으로, 지방은(가),(나),(다)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대개 지방의 경우, 검험을 마친 후 검관으로 하여금 會推하게 해서 내용에 의심이 없으면 錄啓하여 형조에 올렸으며, 이에 형조는 범인의 首從여부, 죄목, 형량 등을 왕을 비롯한 대신들과 심의하는 回啓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살육죄

43) 日省錄 純祖 6年 11月 2日 乙巳.

44) 日省錄 純祖 9年 6月 17日 丙午.

인에 대한 형조의 기사에는 해당 도의 조사 보고가 수록되었다.

<자료 2-1>의(가)는 관찰사의 장계로, 형조는 해당 지역 관찰사의 사건 보고를 토대로 형량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형조의 기사에는 각 道 관찰사의 審理狀啓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관찰사의 심리장계에 대한 규식은 먼저, 범인의 성명, 거주지, 범행방법, 사망일자, 囚禁일자, 형문의 횃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屍親의 고소장 또는 面任·里任의 자필 보고서인 手本도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음 초검에서 나온 상처와 實因, 검험 날짜, 屍親·正犯·干犯·干連 등의 초사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초검관의 성명과 軍현명을 표시하고 검험에 대한 검관의 의견서인 結辭를 적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관찰사가 성명을 표시하고, 결사에 대한 관찰사의 판결인 題辭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복검 과정은 초검 과정과 동일하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만약 시친이나 정범의 家屬들에 의한 상언이나 격쟁으로 조사하게 되었을 경우 그 原情 및 형조의 回啓, 本道 검험관의 의견서인 跋辭, 형조의 覆啓를 연, 월일과 함께 기록하게 하였다.<sup>45)</sup>

이러한 규식을 토대로 한성부나 지방 모두(가)형조의 기사와 관찰사의 장계 안에는 ① 범인이 거주하는 部名·軍현명과 성명, ② 피해자의 성명, ③ 범행방법, ④ 사망한 시기, ⑤ 옥사가 이루어지 연월일이나 검험 여부, ⑥·⑨ 초검관과 복검관의 부명·軍현명과 성명, ⑦ 피해자의 사망원인(實因), ⑧ 정범, ⑩ 복검관의 초검 내용과의 동일 여부, ⑪ 관찰사의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이 기재되었다.

(나)부분은 <자료 2>는 형조판서의 사건에 대한 의견이며, <자료 2-1>은 관찰사의 보고에 대한 형조의 기사이다. <자료 2>의 경우 ① 형조판서가 검장에 나타난 상흔과 사망 시기를 중심으로 치사자의 사망원인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② 죄인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였다. <자료 2-1>(나)의 경우도 관찰사의 장계를 토대로, 본 사건에 대한 형조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칙적으로 死罪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형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다시 詳覆하였기 때문에,<sup>46)</sup> 형조의 기사에는 議政의 견해가 함께 수록되었다. 주로 범행동기, 범행도구,

45) 秋官志 卷3, 詳覆部 審理上 審理狀啓規式.

46) 大典會通 卷5, 刑典 推斷條.

범행방법,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형량 등이 언급되며, 이 밖에 증언, 피해자의 상처 정도, 범행이후 범인의 태도, 형조의 올문 적용, 죄목과 형량에 관한 대신들의 의견 등이 기재되었다.

마지막(다)에는 형조의 계사에 대한 왕의 판부가 기재되었다. 판결 부분에는 옥사에 대한 왕의 견해 뿐 아니라 심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왕이 상세히 조사 또는 재조사를 명령하는 내용이나 심리가 완결된 경우 형량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자료 2>, <자료 2-1>과 같은 유형은 「일성록」에 수록된 모든 살육범죄인에 게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사이다. 이러한 유형은 앞의 <자료 1>보다는 범죄의 정황이 상세하지 않지만, 이에 못지않게 범죄 관련 내용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셋째, 형조의 계사에 살육죄인의 가족이 올린 上言이나 擊錘의 原情이 수록된 경우이다. 1849년(철종즉위) 한성부 동부에서 발생한 李鎭倫 사건에 대한 아들 李巨福의 원정을 사례로 제시하였다<자료 3>.

<자료 3> 1849년(哲宗即位) 살육죄인 李鎭倫에 대한 아들 李巨福의 原情

형조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 … ① 東部の ② 童蒙인 ③ 李巨福의 原情에 이르기를, ④ 저의 아버지(李)鎭倫은 본래 洋人으로 懸房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현방의 使喚 梁學舞가 다른 현방의 肉種을 사와서 몰래 스스로 發賣하다가 禁隸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 저의 아버지가 중간에서 만류하니 … 학무가 이후 여러 날 진저림 시장에 나왔는데, 갑자기 염병을 얻어 치사하니 屍親의 무리가 저의 아버지에게 혐의를 품고 그날 서로 말싸움한 일로 무함하여 발고하였습니다. 初檢에서는 집힐 만한 상흔이 없어 실인이 병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삼검에 이르러서는 무릎에 부딪힌 것으로 기록되어 마침내 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學舞가 살아있을 때 병의 증세를 말하면 …그가 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은 정녕코 의심이 없습니다.’… ” 47)

원정에는 아들 이거복이 아버지 이진륜이 억울하게 살인의 죄목을 받게 된 사연을 수록하였다. 격쟁 원정의 서식은 제일 먼저 ① 격쟁인의 거주지가 제시되어 있으며, ② 신분, ③ 격쟁인의 성명, ④ 격쟁원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47) 日省錄 哲宗 卽位年 12月 17日 庚辰.

격쟁의 원정에는 대체적으로 원정의 대상자인 범죄인(가해자)의 신분과 직역이 제일 먼저 기재되었으며, 범죄인과 치사인과의 관계, 치사인의 당시 행적, 치사인의 인적·병적사항, 범죄인과 시친과의 원한 여부, 옥사가 이루어진 과정 등 사건 전후의 정황이 상세하게 서술되었다. <자료 3>처럼 범죄인 가족의 상언이나 격쟁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의 입장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나 원한 여부, 당시의 범죄 상황, 사건 후 피해자 가족의 대처 등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형조의 啓覆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경우이다. 계복은 왕에게 上奏하여 사형수를 거듭 심리하는 것으로, 매년 10월 중에 三覆을 거행하였다. 初覆에 원임 대신, 육조 판서, 한성부 판윤 등이 입시하여 사형수의 錄案이 낭독될 때마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며, 이를 토대로 왕은 판결을 내렸다.

<자료 4> 1777년(正祖1) 살육죄인 鄭漢龍에 대한 啓覆

(가) 형조판서 張志恒이 계하여 아뢰기를, “泮人 鄭漢龍이 環刀로 사람을 쳐 무릎뼈가 절반이 떨어져 나가게 했으므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 律文에 ‘팔, 다리와 몸을 부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여 뼈를 부러뜨리거나 낙태된 경우는 손, 발, 다른 물건에 상관없이 모두 辜限이 50일이다.’로 계산한다면 겨우 하루가 지났고, 『大明律』에는 … 그런데 선왕조 무자년에 평안도의 살육 계복에 대한 전교에서는 ‘살인죄의 고한은 그 법이 매우 중요하니 …’ 수교가 이미 이러하므로 형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청컨대 대신들에게 물으십시오.” 하였다.(나) 내가 대신에게 물으니, ① 영의정 金尙喆이 아뢰기를, “만일 『대명률』에서 고한을 50일로 정한 것으로 논한다면 … 이제 이 정한용을 격식을 갖추어 검사하여 법에 따라 成獄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② 좌의정 鄭存謙이 아뢰기를, “정한용이 칼로 흉악한 일을 저질러 목숨까지 잃게 한 것을 성육하지 않는다면 어찌 목숨으로 갚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고, ③ 우의정 徐命善이 아뢰기를, “정한용의 성육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다) 하교하기를, “경들이 상주한 말이 옳다. … 규례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48)

<자료 4>는 성균관 유생 鄭漢龍이 環刀로 사람을 쳐 죽게 한 사건으로, 살육

48) 日省錄 正祖 元年 7月 15日 戊寅.

죄인에 대한 형조의 계복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가)형조판서 張志恒이 본 살육에 관해 형률의 조문과 先王의 수교 등을 적용하여 옥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 후, 대신들의 의견을 청하였다. 이에(나)에서 정조가 의정부의 대신들에게 정한용 옥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① 영의정 김상철, ② 좌의정 정존겸, ③ 우의정 서한겸이 成獄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왕에게 상주하였다. 정조는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을 토대로(다)에서 살육의 규례에 따라 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계사는 형조가 주청한 범죄의 안건에 대해 대신들의 견해와 왕의 판결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왕과 신하의 인식을 확인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형조, 의정부의 대신 그리고 국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으며, 그 판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형조의 계사를 통해 당시 살육사건의 보고 과정과 그에 대한 형조의 법률 적용 과정, 당시 사건의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3.3 「日省錄」 刑獄類와 「審理錄」·「秋曹決獄錄」의 내용 비교

日省錄」 刑獄類가 다른 범죄 자료들과 달리 시기적 연속성이 뚜렷하며 양적인 면에서 많은 범죄를 포괄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일성록」에 기록된 범죄의 내용을 다른 범죄 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내용면에 있어서 일성록 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자료의 한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일성록」의 기록을 18세기는 「審理錄」, 19세기는 「秋曹決獄錄」을 통해 상호 비교하여 살펴보되, 각 자료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시기, 동일 범죄인을 기준으로 자료별 옥안을 검토하였다.

#### ① 「日省錄」과 「審理錄」

우선 정조대 「일성록」에서 가장 많은 자료 유형을 보인 옥안을 「심리록」과 비교하였다. 1793년(정조17) 東部 살육죄인 朱成哲의 옥안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자료 5> 「日省錄」에 기재된 1793년(正祖17) 京囚 朱成哲의 殺獄案

(가) 형조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동부의 첨정 내에 금월 초 7일 加五里 任掌 韓二夢 등의 수본에 이르면, ‘本里의 尹判書가 墓舍를 修補하였는데, 어젯밤 사이에 牛耳里에 사는 朱成哲이라는 놈이 이 택(필자주:윤판서)의 京役軍 高小得을 칼을 빼서 찢러 高哥가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 屍親의 처 於仁連伊의 조사에 이르기를, ‘… 이달 초 7일에 墓直 姜太位가 와서 말하기를 너의 남편이 떡을 먹다 체하여 거의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므로(강)태위와 함께 나가니 남편이 주인이 없는 빈방에 누워있었는데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 正犯 朱成哲의 공초에서 말하기를, ‘저는 去毛匠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데, … 致死人이 갑자기 쏙 나와 꾸짖고 욕하며 말하기를, ‘가죽에 남은 고기가 많으니 네가 도둑놈이다’라고 하므로 … 제가 구타를 면하고자 칼을 잡은 오른손으로 … 마침내 넓적다리 사이를 찌르자 … 간증인 강태위의 조사에 이르기를, ‘… 치사인 고소득이 벗겨 놓은 가죽에 고기가 많은 것을 보고 성철과 말로 꾸짖으며 싸웠는데 잠시 후에 소득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려 급히 나가보니 소득이 성철을 부여잡고 말하기를 이놈이 칼로 나를 찢었다…’고 합니다. 49)

(나) 해조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罪人 朱成哲의 공초 내에 ‘저의 根脚은 父는 良人으로서 이름은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양인으로 이름은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 부모님은 西部 分繕工內契에서 태어나 살았으므로 … 양녀 車召史와 결혼하고 東部 牛耳里에서 입적하고 살았습니다. 行凶한 절차는 … 지난 10월 초 6일 밤 이웃에 사는 姜太位가 저에게 소를 도살할 것을 요구하므로 함께 그 집에 가서 牛隻을 도살할 때 … 주성철이 고소득을 찢러 죽인 경위를 이미 낱낱이 자복했으며 이것은 一罪에 관계되니 청컨대 법전에 의거하여 照律하고 의정부에 보고하여 詳覆을 시행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이에 윤택하였다. 50)

「일성록」에는 죄인 주성철에 대한 살육안 뿐 아니라 사형을 결정하는 문서인 結案도 수록되어 있다.(가)의 형조의 계사에는 東部 加五里 任掌 韓二夢의 手本을 비롯하여 시친인, 정범, 간증인의 조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범죄 관련인의 신분·직역이 가해자는 去毛匠인 백정이며, 피해자는 비부이면서 雇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싸움은 소가죽에 고기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이유로 도적이란 모욕적인 말을 고군인 고소득이 주성철에게 한 것이 원인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나)는 죄인 주성철의 결안으로, 범죄인의 부모를 비롯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의 신분, 성명, 생몰이 기재되었으며, 아울러 범죄인의

49) 日省錄 正祖 17年 11月 25日 甲寅.  
50) 日省錄 正祖 17年 11月 30日 己未.

결혼 여부, 거주지, 범행경위 등도 상세히 기입되었다.

이에 반해 주성철 옥사에 대한 「심리록」의 기록을 보면 <자료 5-1>과 같다.

<자료 5-1> 「審理錄」에 기재된 1793년(正祖17) 京囚 朱成哲의 殺獄案

東部 朱成哲 獄事. 成哲은 백정이다. 사소한 일로 고소득과 다투다가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상처) 목과 肩胛,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에 찔린 상처가 있고 속살이 비어져 나왔다.(실인) 칼에 찔린 것이다. 계축년 10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sup>51)</sup>

<자료 5-1>은 왕의 관부를 제외한 형조의 계사만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심리록」의 경우 일정한 형식으로 옥안이 정형화되어 군현명, 범죄인 성명, 상처, 實因, 成獄 일자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성록」과 달리 왜 싸움이 일어났으며, 어떤 과정으로 상호간 폭행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나 시친인의 진술, 간증인들의 태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사건의 발생원인도 앞의 <자료 5>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부터 치사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당시 범죄의 경위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 「심리록」은 사건의 根由를 단지 ‘사소한 일(微事)’이라고 애매하게 서술하였다. 「심리록」의 사건 기록이 「일성록」에 비해 상당히 축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성록」의 기록을 통해 정조대 범죄의 모든 정황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성록」은 1873년(고종10) 경복궁의 화재로 원본의 일부가 소실되어 개수된 것이다. 그 가운데 정조대의 기록이 29.8% 개수되어, 「일성록」에 기록된 역대 왕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첨삭되거나 수정되었다.<sup>52)</sup> 그런 이유로 정조대 「일성록」 기록은 즉위 초기의 경우 「심리록」보다 간략한 면이 있다. 이에 대한 개별 사례로는 <자료 6>과 <자료 6-1>을 들 수 있다.

51) 審理錄 卷23, 癸丑1 京 東部 朱成哲獄, “成哲屠漢也 因微事 與高小得 相鬪刺之 卽地致死 (傷處)項頸肩胛右腿刺痕 肉歛(實因) 被刺 癸丑十月成獄.”  
52) 崔承熙, “1873년(高宗10) 日省錄의 一部 燒失과 改修”, 『奎章閣』12(1989).

<자료 6> 1782년(正祖6) 猥濫 擊錘人에 대한 刑曹의 계

형조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외람 격쟁인들의 원정을 받아서 살펴보니 ... 李召史가 말하기를 ‘저의 남편 金一淵이 車振成에게 찔렸는데, 필경 원수를 갚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당초에(차진성이 김일연을) 칼로 찌른 것은 이미 자기 처와 몰래 정을 통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 청컨대 시행하지 마십시오.”<sup>53)</sup>

<자료 6-1> 「審理錄」에 기록된 京囚 車振成의 殺獄案

振成은 아내 得節이 金一淵에게 강간을 당하자 직접 김일연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하였다.(상처) 왼쪽 사타구니에 찔어진 상처가 있었다.(실인) 칼에 찔린 것이다. 기해년 12월에 옥사가 이루어졌다.(형조의 계사) 또 奴主의 명분을 범했으니 청컨대 詳覆을 시행하소서...(진교) 차진성은 제 아내가 다른 사람과 몰래 간통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단지 간부가 세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분풀이를 할 수 없었다. 난동이 일어나자 화가나 손찌검이 간부에게까지 옮겨가 결국 찔러 죽인 뒤에야 그쳤으니 차진성의 소행은 죄를 줄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 ...<sup>54)</sup>

<자료 6>은 살육죄인 車振成에 대한 형조의 계이다. 차진성 옥사에 대한 「일성록」의 기록은 치사자인 金一淵의 처 李召史가 격쟁한 원정에서 일부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도 형조가 외람격쟁인의 원정을 시행하지 말게 하라는 계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 수 있을 뿐이다. <자료 6>의 일성록 기록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이 김일연과 차진성이라는 사실과 범죄 이유가 김일연이 차진성의 처와 潛奸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진성 옥사에 대한 「심리록」의 기록은 <자료 6-1>로, <자료 5>의 경우처럼 범죄의 정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해자의 성명과 상호 관계,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원인, 사망원인, 피해자의 상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왕의 전교를 통해 차진성의 아내와 치사자 김일연과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관계, 본 살육에 대한 왕의 견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조대 범죄에 대한 일성록」의 기록은 전체적으로 「심리록 보다 다양

53) 日省錄 正祖 6年 8月 19日 壬寅.  
54) 審理錄 卷3, 京 庚子1 北部 車振成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범죄양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정조 즉위 초기의 몇몇 살육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리록」보다 내용이 간략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한편으로는 일성록이 개수되는 과정에서 간략해진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형옥관련 기록에 대한 국가의 정책 시점이 정조가 즉위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성록」의 경우 정조 초기의 형옥류가 간략하게 기록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② 「日省錄」과 「秋曹決獄錄」

「일성록」과 「추조결옥록」의 내용 비교는 살육죄인과 비살육죄인으로 나누어 상호 고찰하였다. 1838년(헌종4) 西部 살육죄인 崔景孫과 1852년(철종3) 경희궁 기물 절도범 金奉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자료 7> 「日省錄」에 기재된 살육죄인 崔景孫 관련 자료

(가) 또 계하여 아뢰기를, “지난 정월 16일 서부에 사는 양인 鄭順吉의 發告에 이르기를 ‘저의 동생 大吉이 남에게 사환되다가 동리에 사는 崔景孫의 집으로 옮겨 갔는데,(그 집에서) 수도 없이 구타당해 이번 15일 날이 저물 때 마침내 죽었습니다’고 하므로 법례에 의거하여 검험을 행하였습니다. 초검관 서부도사 洪配厚의 검장에 실인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기록되었으며, 정범은 최경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이 옥사는 대길의 문을 연 것은 그가 멋대로 간 것이 아니라 ... 실인이 이미 목과 목덜미에서 분명하며 간증인이 모두 그 흉악을 행한 것을 진술하였으니 정범 최경손을 청컨대 다시 엄한 형신을 가하여 정상을 알아내야 합니다”하니 모두 윤택하였다.<sup>55)</sup>  
(나) 양인 崔命吉의 원정에 이르기를, “저의 아버지(최)景孫은 지난 무술년 정월 일에 출타한 뒤에 동리에 거주하는 金仁旭의 행랑에 사는 鄭大吉이란 아이가 찾아왔는데, ... 이틀 뒤 대길이 과식하다가 목이 막혀 다음날 죽었는데, 그 집주인 인옥이 본디(저의 아버지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 몰래 대길의 아버지를 부추겨 구타당해서 죽은 것처럼 誣訴하여 소장을 냈습니다...”<sup>56)</sup>  
(다) 또 계하여 아뢰기를, “서부 최경손이 정대길을 넘어뜨려 목뼈가 어긋나 다음날 치사하여 무술년 정월 17일에 가두었습니다. 이 옥사는 이웃 부민이 능멸을 당한 것에 분함을 품고 雇奴가 문을 연 것에 격노하여 발로 차서 엎어뜨렸습니다. ... 청컨대 계속 형신하여 자복을 받아야 합니다.”<sup>57)</sup>

55) 日省錄 憲宗 4年 3月 17日 己丑.  
56) 日省錄 哲宗 卽位年 12月 17日 庚辰.

<자료 7>은 「일성록」에 기재된 崔景孫의 살옥안으로, 옥사가 1838년(헌종4)에 이루어져 1853년(철종4)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7>을 통해 한 죄수의 成獄에서부터 판결까지의 처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가)는 먼저 살인사건 발생 후 시친의 發告를 통해 한성부에서 검험을 실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고장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 鄭大吉과 가해자 최경손이 동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둘 사이의 관계가 雇工과 雇主라는 점, 목이 부러져서 치사했다는 점, 정범은 고주 최경손이라는 점, 피해자의 구타상황 등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가해자인 최경손의 아들 崔命吉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한 격쟁의 원정이다. 원정에는 범죄인과 치사인과의 관계가 같은 마을에 사는 富民과 雇奴라는 점, 치사인 정대길의 사건 당시 자기의 집에 와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치사인의 당시 행적, 가해자 최경손이 치사자가 사는 행랑 주인 김인옥과 원한관계에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김인옥이 정대길의 아버지를 부추겨 誣告가 이루어진 점 등이 서술되어 있다. (다)에서는 정범과 피해자의 성명, 사망원인, 성욕일자, 범죄의 원인, 구타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자료 7-1> 「추조결옥록」에 나타난 최경손 옥안은 <자료 7> 철종 4년의 형조 기사(다)를 요약, 기록하였다. 「추조결옥록」에 나타난 옥안의 경우 범죄인에 대한 형조의 판결만을 실어 내용이 간략한 면을 살필 수 있다.

<자료 7-1> 「秋曹決獄錄」에 기재된 1853년(哲宗4) 京囚 崔景孫 獄事

“京囚 崔景孫의 獄事는 아들(죄)命吉의 擊錘으로 인해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형조의 회답 내에 原案을 상세히 살펴보니 이웃 富民이 能멸을 당한 것에 분함을 품고 고노가문을 연 것에 격노하여 발로 차서 엎어뜨렸습니다. 목뼈가 바로 다쳤는데도 잡아서 끌어 목뼈가 먼저 부러졌으며 ... 계속 형신하여 자복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57)</sup>

이는 비살옥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의 <자료 8>은 1852년(철종3) 경희

57) 日省錄 哲宗 4年 1月 18日 癸亥.

58) 秋曹決獄錄 卷9 癸丑(哲宗 4年) 正月.

궁의 철물을 훔친 金奉學에 대한 「일성록」의 기록이다. 「일성록」에는 절도범 김봉학의 직역, 거주지 등 인적 사항, 절도 이유, 절도 횟수, 절도한 물품과 이에 대한 처리과정 등이 죄인의 供招를 통해 자세히 진술되었다. 간련죄인인 買贓人 또한 마찬가지로 매장죄인의 직역, 거주지 뿐 아니라 장물의 매득과정과 방매 가격 등을 공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8> 1852년(哲宗3) 慶熙宮 偷竊罪人 金奉學에 대한 형조의 계

형조에서 계하여 아뢰기를, “죄인 金奉學에게 和應하고 指使한 사람을 추문하니, ‘저는 양주민으로 올 6월에 상경하여 新門 내에 우집하며 집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8월 고가를 받고 이따금 경희궁에서 제조하는 역에 나가 이후부터 길이 익숙하여 차비문을 넘어 먼저 鎖鑰와 柱鐵을 취하고 鐵環과 排目を 빼서 나왔습니다. … 買贓罪人 장성이, 정이중 또한 도적놈과 부동하여 몰래 장물을 산 정황을 추문하니 성이가 말하기를, ‘저는 安洞에 거하면서 雜鐵商을 업으로 합니다. 봉학이 올 8월에 철물을 가지고 와서 척매하고자하므로 제가 의심없이 買得하였고 또 9월에 매매하였는데 …’ 이중이 말하기를, ‘저는 布廩 屏門에 살면서 잡철상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지나가던 어떤 놈이 鐵連環 61개, 排目 241개를 가지고 와서 저의 시전에 팔므로 사두었으나 …’라 합니다. 性伊, 履中 등은 鐵環을 만든 모양이 이미 사가의 물건이 아닌데도 어려움 없이 고의적으로 매매하여 감히 이득을 낼 계획을 하니 그 행한 바를 살펴보면 또한 몹시 이상스럽고 놀랍다. 모두 청컨대 조율하여 처벌하십시오.<sup>59)</sup>

<자료 8-1> 1853년(哲宗4) 慶熙宮 偷竊罪人 金奉學에 대한 左右捕盜廳의 계사

左右捕盜廳의 啓辭내에 “삼가 본청의 계목에 대한 批旨에 의하면, ‘慶熙宮의 鐵物을 훔친 金奉學과 買贓人 張性伊, 鄭履中 등을 모두 형조로 이송할 뜻을 감히 아뢰니다’하니 진교하여 말하기를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형조의 계목에 ‘김봉학은 愚迷한 부류로 몰래 궁성을 넘어 차비내의 鎖環을 훔쳐 내었는데, 몰래 賣物한 것이 진실로 많지 않아도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에 관계되니 잡아서 조사하고 형조에서 계복하여 이미 자백을 받았습니다. … 張性伊 鄭履中 등은 鐵環을 만든 모양이 이미 사가의 물건이 아닌데 어려움 없이 고의적으로 매매하여 감히 이득을 낼 계획을 하니 그 행한 바를 살펴보면 또한 몹시 이상스럽고 놀랍습니다. 모두 청컨대 조율하여 엄히 처벌하십시오…<sup>60)</sup>

59) 日省錄 哲宗 3年 11月 10日 丙辰.  
60) 秋曹決獄錄 卷9, 癸丑(哲宗 4年) 9月.

<자료 8-1>인 추조결옥록의 기록에는 「일성록」에 나타난 범죄인의 상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성록」형조의 계사를 요약하여 다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성록」보다 기록이 간략하며, 축약되어 있어 범죄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 <자료 8-1> 하단 부분의 밑줄 친 기록은 「일성록」과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성록」에 나타난 살옥안은 범죄인에 대한 원래 옥안의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반해 「추조결옥록」은 옥안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범죄자의 진술이 제외된 채 형조의 처결과 왕의 판부만을 요약하여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성록」형옥류가 범죄 자료인 「심리록」과 「추조결옥록」편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조결옥록」에 전재된 범죄인의 기록이 「일성록」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경향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결 론

이상으로 「일성록」형옥류의 분석을 통해 사죄 기록에 대한 「일성록」의 자료적 가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성록은 국왕 정조의 주도 하에 편찬된 역사서로, 정조 개인의 정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관찬사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이 사관 외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폐쇄적인 성격이 짙은 반면, 일성록」은 정조 자신이 국정 운영에 참고할 목적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개방적인 성격을 띠었다.

특히 「일성록」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정조는 행정 기록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형옥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옥안의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기록, 검험사목의 규정과 굴검법의 시행, 각종 법제 자료의 편찬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정조가 옛 성왕들의 德化에 의한 이상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예악과 함께 형정에도 힘쓴 결과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조의 의지는 「일성록」에

형옥류가 기재되는 배경이 되었다.

일성록」 형옥류가 가지는 자료적 특징을 보면, 먼저, 조선후기 어느 사료보다도 가장 많은 행정관련 기록을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범죄양상 및 연구 자료에 대한 시기적 연속성을 뚜렷이 살필 수 있었다. 일성록」 형옥류에는 위법관리에 대한 처벌, 상언·격쟁, 추국죄인, 살육죄인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처벌, 정배죄인의 석방 여부, 경범죄인에 대한 석방 수효 등 각 시기 범죄인의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사죄를 중심으로 고찰해보면 「조선왕조실록」이 1년에 2, 3건에 그친데 반해, 「일성록」은 평균 33건 이상의 범죄를 기록하였다. 범죄의 시기별 현황 또한 「審理錄」이나 「秋曹決獄錄」이 정조대나 19세기 등 특정시대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일성록」은 정조대에서 고종대까지 누락된 시기 없이 기록되어 있어 자료의 시계열성이 뚜렷하였다.

이와 함께 「일성록」 형옥류는 18~19세기 당시의 범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수록된 내용 또한 다른 자료에 비해 풍부하였다. 「일성록」은 범죄인에 대한 원래 옥안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어 「심리록」과 「추조결옥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범피 관련인의 진술[招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조대에서 철종대까지 발생한 중범죄에 대한 각 관사의 계사와 함께 피해자나 가해자 가족들의 상언·격쟁 원정, 해당 군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각 도 관찰사의 장계, 왕의 판결 등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그 결과 범죄가 발생한 지역, 범죄인 성명, 살인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상태와 사망원인(實因), 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범죄 관련 요소들을 용이하게 살펴 당시의 사회상과 민의 동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형수의 처리과정이 심리 단계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 죄수의 처리절차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였다.

이처럼 형옥류에 轉載된 자료의 질적·양적인 풍부함으로 인해 「일성록」은 범죄 자료인 「심리록」과 「추조결옥록」 편찬의 기본 사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일성록」 형옥류를 「심리록」과 비교한 결과 「심리록」의 사건 기록이 「일성록」의 기록을 축약하거나 그대로 전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조결옥록 또한 「일성록」에 나타난 형조의 판결만을 그대로 전재하던지 아니면 요약 기술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들은 곧 「일성록」이 18~19세기 행정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1차 사료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형정에 대한 일련의 작업들을 「일성록」 형옥류에 그대로 기록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열람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정조의 형정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國史編纂委員會 영인본, 탐구당, 1984)  
承政院日記(國史編纂委員會 영인본, 탐구당, 1969)  
日省錄(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82)  
審理錄1-4(국역본,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0)  
審理錄(奎 1770, 奎 5792)  
秋官志(법제자료 75-78집, 법제처, 1975)  
秋曹決獄錄(奎 15148, 43책)  
捕盜廳臚錄 上·中·下(보경문화사, 1985)  
弘齋全書 1-20(민족문화추진회, 1998)  
日省錄凡例(奎6321)  
大明律直解(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 규장각, 1999)  
續大典(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 규장각, 1997)  
역주 牧民心書 1-4(창작과 비평사, 1984)  
各司受教·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 규장각, 1997)  
신병주, “「承政院日記」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奎章閣」, 24(2001).  
沈載祐, “審理錄 研究-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오향녕, “조선후기 국사체계의 변동에 관한 시론-실록에서 일성록으로”, 역사와

현실, 52(2004).

柳承喜, “正祖代~哲宗代 漢城府 死刑犯罪의 실태와 민의 갈등양상- 日省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권41(2007), 189쪽.

李泰鎭·洪順敏, “「日省錄 刀削의 실상과 경위”, 『한국문화』, 10(1989).

趙允旋, “朝鮮後期 田民訟의 樣相과 民의 法意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崔承熙, “1873년(高宗10) 日省錄의 一部 燒失과 改修”, 『奎章閣』, 12(1989).

韓相權, “正祖年間 上言·擊錚에 관한 분석」,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上言·擊錚 연구』, (一潮閣: 1996).

<附表> 「일성록」 형옥류에 나타난 正祖代~哲宗代 死罪人의 현황

啓辭 시기	啓辭 내용
연도	
1777년(정조1)	서울의 위조죄인 李麗伊의 3인의 首從 分별 외 8건
1778년(정조2)	살옥죄인 柳光義의 判付외 9건
1779년(정조3)	위조죄인 鄭氣淳, 살옥죄인 金以灝에 대한 판부외 29건
1780년(정조4)	살옥죄인 曹允文에 대한 형조판서의 계 외 24건
1781년(정조5)	살옥죄인 李德鉉, 鄭亮采에 대한 계 외 69건
1782년(정조6)	살옥죄인 金尙必, 吳召史에 대한 형조의 복계 외 55건
1783년(정조7)	蠶頭 방화죄인에 대한 금위영의 계 외 63건
1784년(정조8)	위조죄인 朴昌浩, 살옥죄인 林枝郁에 대한 형조의 계 외 77건
1785년(정조9)	살옥죄인 金萬泰에 대한 형조의 계 외 61건
1786년(정조10)	살옥죄인 鄭盤奉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1건
1787년(정조11)	살옥죄인 全一贊에 대한 회계 외 27건
1788년(정조12)	강진현 尹彦緒 살옥사건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0건
1789년(정조13)	살옥죄인 趙命得에 대한 형조의 계 외 75건
1790년(정조14)	살옥죄인 韓灌 외 2인에 대한 경기감사의 장계 외 87건
1791년(정조15)	형조의 살옥안(살옥죄인 朴同孫 외 2명) 복계 외 6건
1792년(정조16)	살옥죄인 許儼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1건
1793년(정조17)	어보위조죄인 黃龍瑞에 대한 형조의 계 외 23건
1794년(정조18)	살옥죄인 음효관 옥사에 대한 형조의 계 외 50건
1795년(정조19)	형조의 살옥안(살옥죄인 朴安성, 金安澈)에 대한 판하 외 25건
1796년(정조20)	살옥죄인 임얼박에 대한 전라감사의 장계와 형조의 계 외 25건
1797년(정조21)	살옥죄인 이일득, 음효관에 대한 형조의 계 외 75건
1798년(정조22)	굴총죄인 李行訥과 살옥죄인 黃大潤에 대한 형조의 계 외 34건
1799년(정조23)	살옥죄인 卞宗海, 李昌麟에 대한 형조의 계 외 32건
1800년(정조24)	상주 살옥죄인 方三祿에 대한 관찰사의 장계와 형조의 계 외 35건
1801년(순조1)	범월인 李顯宅에 대한 비변사의 계 외 5건
1802년(순조2)	형조 옥안 절도죄인 金在崙에 대한 포도청의 공초 외 17건
1803년(순조3)	진주부 살옥죄인 鄭瑒에 대한 형조의 계와 왕의 판하
1804년(순조4)	살옥죄인 申從三, 權龍元에 대한 형조의 계 외 5건

「日省錄」 刑獄類에 나타난 死罪 기록의 고찰

1805년(순조5)	살옥죄인 金大益, 金宗活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4건
1806년(순조6)	범월죄인 崔德來에 대한 영의정의 계 외 36건
1807년(순조7)	효창묘 기물 투질죄인에 대한 승정원과 형조의 계 외 38건
1808년(순조8)	위조족보 판매죄인에 대한 형조판서의 계 외 13건
1809년(순조9)	형조죄인 金鼎玉 외 94인에 대한 왕의 관부
1810년(순조10)	살옥죄인 金應得에 대한 형조의 계 외 46건
1811년(순조11)	살옥죄인 金元培의 6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12년(순조12)	살옥죄인 許曄 외 3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13년(순조13)	살옥죄인 朴貴得에 대한 형조의 계 외 94건
1814년(순조14)	御寶僞造 죄인에 대한 형조의 계 외 35건
1815년(순조15)	군기 투출죄인에 대한 병조의 계 외 21건
1816년(순조16)	私鑄錢 죄인과 살옥죄인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2건
1817년(순조17)	위조죄인 丁聖喆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4건
1818년(순조18)	절도죄인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26건
1819년(순조19)	사굴죄인 徐道元에 대한 황해감사의 장계 외 16건
1820년(순조20)	살옥죄인 金聖수에 대한 擊錚人의 發狀과 형조의 계 외 25건
1821년(순조21)	살옥죄인 鄭聖仁, 崔仁福 외 87인에 대한 형조의 계와 관부
1822년(순조22)	宣禧宮 器物 절도죄인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11건
1823년(순조23)	살옥죄인 劉連卜 외 21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24년(순조24)	범월죄인 金振聲에 대한 관부 외
1825년(순조25)	형조에서 호남 심리안(살옥죄인 8인) 외 51건
1826년(순조26)	楊根 살옥안에 대한 경기감사의 장계 외 23건
1827년(순조27)	살옥죄인 柳貴先 외 27인에 대한 관찰사와 형조의 계
1829년(순조29)	살옥죄인 李孟山 외 3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30년(순조30)	살옥죄인 李啓華에 대한 형조의 계
1831년(순조31)	살옥죄인 張學善 외 173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32년(순조32)	살옥죄인 申士化 외 61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33년(순조33)	살옥죄인 柳白孫 외 19인에 대한 관찰사와 형조의 계
1834년(순조34)	東南關王廟 祭物 절도 죄인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23건
1835년(현종1)	위조마패에 대한 형조의 계 외 50건
1836년(현종2)	홍패위조 죄인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6건
1837년(현종3)	靈壽閣 기물 절도죄인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21건

1838년(헌종4)	살옥죄인 李命壽에 대한 형조의 계 외 41건
1839년(헌종5)	살옥죄인 金千鑑 외 6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40년(헌종6)	태창 투곡죄인에 대한 호조판서의 계 외 18건
1841년(헌종7)	범월죄인에 대한 우의정의 계 외 4건
1842년(헌종8)	살옥죄인 徐震煥, 徐載紀에 대한 형조의 계 외 75건
1843년(헌종9)	절도죄인 鄭聖煥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17건
1844년(헌종10)	살옥죄인 鄭奭基 외 3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45년(헌종11)	살옥죄인 李玄文에 대한 경기감사의 장계 외 39건
1846년(헌종12)	사주전 죄인 蔡弘祿에 대한 우의정의 계 외 12건
1847년(헌종13)	살옥죄인 妙月 등에 대한 형조의 계 외 33건
1848년(헌종14)	살옥죄인 金龍範 외 26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49년(헌종15)	살옥죄인 崔守吉 외 2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50년(철종1)	형조죄인 李弼文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0건
1851년(철종2)	孝定殿 제기 절도죄인 李淵鍾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17건
1852년(철종3)	홍패위조죄인과 살옥안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26건
1853년(철종4)	투절죄인 柳碩根과 각도 살옥안 외 34건
1854년(철종5)	각도 살옥안(살옥죄인 李致德 외 34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55년(철종6)	각도 살옥안(살옥죄인 高承甲 외 22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56년(철종7)	난입죄인 卞奎煥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18건
1857년(철종8)	살옥죄인 姜貴奉에 대한 형조의 계 외 37건
1858년(철종9)	절도범 吳成祚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46건
1859년(철종10)	해주 살옥죄인 金洛西에 대한 형조의 계 외 56건
1860년(철종11)	절도죄인 金貴奉에 대한 포도청의 계 외 6건
1861년(철종12)	각도 살옥안(살옥죄인 河連叔 외 45인)에 대한 형조의 계
1862년(철종13)	살옥죄인 金泰興, 金千石에 대한 형조의 계 외 15건
1863년(철종14)	선희궁 기물 절도죄인 金性孫에 대한 형조의 계